

-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

※ (예) 4.2.~6.(5일), 4.16.~20.(5일), 4.24.~27.(4일), 5.14.~18.(5일), 5.28.(1일)을 사용한 경우
총 20일을 사용했으므로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

(4) 「국가공무원 복무·징계 관련 예규」 2023.1.1.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(2023.1.1.)

-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시행당시 시행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시간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의 육아시간은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함
- 시행일('23.1.1.) 기준, 월 단위로 사용 중인 육아시간(최초 사용 시작일이 '22.12.2.부터 '22.12.31.까지 중에 있는 경우)은 개정 규정을 적용함

※ 다만 이 경우(최초 사용 시작일이 '22.12.2.부터 '22.12.31.까지 중에 있는 경우) 월 단위로 사용 중인 육아시간의 최초 사용 시작일부터 1개월 내 육아시간을 사용한 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공제함

※ 예1) 최초 사용 시작일이 '22.12.5.이고, '22.12.6.~9. 미사용 후 '22.12.12.~'23.1.4. 까지 사용 시 → 19일 사용, 19일 차감

※ 예2) 최초 사용 시작일이 '22.12.5.이고, '22.12.6. 미사용 후 '22.12.7.~'23.1.4. 까지 사용 시 → 22일 사용, 1개월 차감

- ('18.07.02.~ '23.1.1. 이전) 24개월은 월(月) 단위로 산정(해당 월에서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1개월*이 되는 날까지를 1월 사용한 것으로 봄)하되, 사용에 대한 신청 · 승인은 일(日) 단위로 최대 1주일까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

* 1개월이라 함은 사용자가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기산일(초일)로부터 익월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까지를 의미함

※ 예) '18.7.15.에 최초로 사용할 경우 '18.8.14까지 이용단위(月)를 지정한 것으로 봄

- ('18.07.02. 이전)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

※ 다만, 합산일수가 240일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

※ 예1) '18.4.2~6(5일), 4.16.~20.(5일), 4.24.~27.(4일), 5.14.~18.(5일), 5.28.~31.(4일)을 사용한 경우
총23일을 사용했으므로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

※ 예2) '18.5.1.~6.30.까지 사용한 경우, 총 40일을 사용했으므로 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

- 경과규정에 따른 사용일수 처리는 만 5세이하 자녀의 이용가능 기간에 산입하여 처리

(5)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(2024.7.2.)에 따른 적용례

-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시간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의 경우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함

(6)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 근무 가능(2024.11.8.)

사) 수업휴가

- (1)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교원은 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」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음
- (2) 본인의 법정연가일수를 먼저 사용한 후에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수업휴가가 인정되므로 출석 수업 전 연가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함